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95 발의연월일: 2025. 5. 7.

발 의 자:백혜련·정동영·이해식

박지원 • 이수진 • 박민규

서미화 • 부승찬 • 신정훈

조계원 · 김 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내란 또는 외환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치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계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도 치유의 대상으로 하

여 국가폭력 등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법률 제 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 의문사"를 "군 의문사, 계엄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를 범한 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폭력"이란 1945년 8월	1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	
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	
희생, 사망・고문・상해・실	
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	
작의혹, 테러·폭력·학살, <u>군</u>	<u>군</u>
<u>의문사</u> 및 「제대군인지원에	의문사, 계엄 상황에서 발생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	한 중대한 인권침해
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	
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
2. "국가폭력등"이란 다음 각	2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다.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를 범한 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